

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(김종민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8589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4. 23.

발 의 자 : 김종민 · 김승원 · 한창민
서왕진 · 정일영 · 강준현
박희승 · 허성무 · 전종덕
김준형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비밀누설금지 규정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는 것으로 개인정보 보호, 공익 보호 및 업무의 공정성 유지 등을 위하여 다양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고, 그 대상은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 등 직무상 비밀을 접하는 다양한 주체로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현행 「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은 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두면서 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 대한 비밀누설금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업무 수탁자의 비밀누설행위를 제재하는데 한계가 있음.

이에 「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비밀누설금지 규정을 신설함. 단, 공무원이 아닌 자가 공공성이 높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업무 수행의

공정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비밀누설금지 및 뇌물죄 금지를 포함하는 공무원 의제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함(안 제18조의2 신설).

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장에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8조의2(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) 제18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의 임직원은 「형법」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18조의2(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) 제18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의 임직 원은 「형법」 제127조 및 제1 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 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.</u>